예 산 총 칙

2022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839,909,897	25,197,297
일반회계	795,493,418	23,864,803
특별회계	44,416,479	1,332,494
기타특별회계	44,416,479	1,332,494
상수도	38,802,489	1,164,075
의료급여기금	4,744,647	142,339
자활기금	517,566	15,527
주민소득지원기금	245,740	7,372
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	106,037	3,181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94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,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보조금, 특별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은 성립전 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